

## ■ 특별공급 공통자격

※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으로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당사는 전타입 84㎡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청약가능면적	85㎡ 이하	전 주택형	85㎡ 이하	85㎡ 이하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60㎡ 이하만 가능)	전 주택형
세대주 여부	세대원 및 세대주 모두 가능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자격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자 (태아포함)	①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②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자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세대원 포함) ②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가구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소득요건	없음	*우선공급(50%)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20%) :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추첨제(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부동산가액 3.31억원 이하)	*우선공급(50%) :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20%) : 소득 160% 이하 *추첨제(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부동산가액 3.31억원 이하)	없음	
주택소유여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전매제한	3년(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신청 기준	1세대 1주택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신청(특별공급+특별공급)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접수 방법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원칙(※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접수 가능)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의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li> <li>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생애최초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혐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li> </ul>				